

광명시 공수의 조례

제정	1985.	9. 9	조례 제 340호
개정	1991.	3. 6	조례 제 661호
	1999.	9. 10	조례 제1160호
	2000.	8. 18	조례 제1207호
	2008.	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일부개정	2018.	7. 31	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19.	9. 27	조례 제253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공수의(이하 “공수의”라 한다)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 할 수 있다. <개정 99. 9. 10, 2019. 9. 27>

제3조(공수의의 업무)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
2. 동물의 질병 연구조사
3.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
4.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
5.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
6.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

제4조(해촉) 시장은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.

1. 가축방역 업무실적이 부진할 경우
2. 그 밖의 제반 행정사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

[전문개정 2019. 9. 27]

제5조(수당)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는 「공

광명시 공수의 조례

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8. 7. 31, 2019. 9. 27>

제6조(업무일지비치 및 보고) ① 공수원은 광명시 전 지역을 월 3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99. 9. 10, 2019. 9. 27>

② 공수원은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1. 3. 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. 9. 1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0. 8. 1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9. 9. 27 조례 제2530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광명시 공수의 여비 조례」는 폐지한다.

[별지 서식] <개정 99. 9. 10>

업 무 일 지			
업 무 수 행 일	년 월 일	수의사명	
축 주 또는 관 리 인	주 소		
	성 명		
축 종		두 수	
병 명 과 주 요 증 상 및 지 도 내 용	○ 병 명 :		
	○ 주요증상 :		
	○ 지도내용 :		
가 축 질 병 예 찰 및 조 치 내 용	○ 예찰상황 :		
	○ 예찰결과 질병발생시 조치사항 :		
참 고 사 항			
특 기 사 항			